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안건형*
Keon-Hyung Ahn

〈목 차〉

- I. 서 론
 - II. 제1차 기본계획 국내중재 부문 추진 성과 및 평가
 - III. 제1차 기본계획 국제중재 부문 추진 성과 및 평가
 - IV. 제2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KCAB International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겸 영문학술지 편집위원장, Email: khahn20@kgu.ac.kr.

I. 서론

중재제도는 일찍이 무역과 해상운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어 발전해 온 제도로서, 현재는 무역과 해상운송 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국제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방식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도 중재제도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하고 자국을 전 세계 국제중재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¹⁾

대한민국 정부 역시 중재제도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재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산업진흥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7. 6. 28.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재산업진흥법 제3조²⁾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8년 말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이하 '제1차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9.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³⁾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① 중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재제도 선진화를 통한 중재산업 기반 강화,⁴⁾ ② 중재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중재제도의 쉽고 편리한 이용을 통한 국내중재 활성화,⁵⁾ ③ 중재심리 시설 개선, 중재기관의 사건해결 역량 강화 및 신규 중재분야 발굴을 통한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⁶⁾ ④ 국제중재사건 유치⁷⁾ 전략 수립 및 국제중재사건 유치 지원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 도약” 등을 가장 핵심

1) 안건형, “우리나라 해상중재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仲裁研究』 제3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 24, 2021.

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무부, “2019~2023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pp. 1-18, 2018.

4) 중재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2대 추진과제는 중재 전문인력 양성 및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이다.

5)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한 2대 추진과제는 중재제도 인식 개선과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이다.

6)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추진과제는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 중재기관 역량 강화 및 신규 중재분야 발굴·육성이다.

7) 국제중재 유치 확대를 위한 2대 추진과제는 국제중재 유치 전략 수립 및 국제중재 유치 지원이다.

적인 4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다.⁸⁾ 그리고 법무부는 이러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해왔다. 그렇다면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이 마무리되는 현재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이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평가가 대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⁹⁾

이에 본 연구에서는 II장에서 제1차 기본계획 국내중재 부문 추진 성과 및 평가, III장에서 제1차 기본계획 국제중재 부문 추진 성과 및 평가, IV장에서 제2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들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V장에서 앞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제1차 기본계획 국내중재 부문 추진 성과 및 평가

1. 중재산업 기반 강화

법무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중재산업 기반 강화를 선정하였고, 2대 추진과제로 (1) 중재 전문인력 양성과 (2)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로 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중재 전문인력 양성

제1차 기본계획은 중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 연계 교육, 2) 기업 연계 교육 및 3) 공공연계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1)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 연계 교육

제1차 기본계획의 실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에서 중재 관련 특강, 세미나, 인턴십, 모의상사중재경연, 중재논문경시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법무부, “법무부, 2019~2023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동북아시아 중재 허브’ 발전 전략 제시”, 보도자료(2018. 12. 31), p. 2.

9) 한국중재학회,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pp. 1-88, 2023. 9. 27(다만, 최근 들어 법률서비스 분야의 무역적자 폭이 많이 감소되어 최소한의 성과는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다); 오현석, “중재산업진흥법에 대한 평가 및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 「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3호, 법무부, pp. 1-34, 2023; 국제중재실무회,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용역』,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pp. 1-131, 2022. 12. 15; 황현영,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商事判例研究」 제32권 제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pp. 253-287, 2019; 윤진기,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仲裁研究」 제28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pp. 3-42, 2018.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시험의 난이도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에 필요한 과목들 외에는 수강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중재 과목이 개설된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¹⁰⁾ 여기에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국제거래법이 존재하지만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사법의 내용만 포함될 뿐 중재에 관한 문제는 출제되는 경우가 없어 굳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중재 과목을 수강할 이유가 없다. 국제거래법 과목에 중재 관련 문제들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변호사시험의 문제 수 배분과 다른 교과목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LL.M과 같은 수료증을 수여하는 중재 관련 연구과정의 개설이나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활성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법률가들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¹¹⁾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중재 전문인력 양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법률가 대상 전문교육과정 활성화나 중재 수요가 가장 많은 건설 분야의 대학원에 중재 과목들을 일부 포함시키는 과정을 개설하거나, 또는 전국의 무역학과 및 국제통상학과 학생들, 더 나아가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재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 중재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¹²⁾

2) 기업연계 교육

법률가 중심의 중재전문가 양성만으로는 중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기업의 요청 또는 중재원 직원들이 직접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거나 발굴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재원 임직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좀 더 전략적으로 해운 및 건설 등 중재에 이미 친화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 IT 및 가상화폐 등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연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한 외부의 중재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0) 서울대학교에는 장승화 교수와 정선주 교수가 2학년 2학기 심화과목으로 각각 “국제상사중재”와 “중재법”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現 한국중재학회장인 신승남 교수가 2학년 1학기에 “International Litigation & Arbitration”이라는 3학점 영어강의 과목을 개설하여 현재 강의가 진행 중인데, 수강생 수는 대부분 3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

11) 국제중재실무회(2022), op. cit., pp. 84-85.

12)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통상법무정책관 주관 하에 통상 분야 미래 전문인력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일선 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통상교육 및 강연을 관련 전문가들을 외부강사로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3) 공공연계 교육

대한상사중재원의 대표적인 공공연계 교육을 꼽는다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법무 및 송무 담당 공무원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연수원의 국가송무 과정이다.¹³⁾ 이 프로그램은 다시 기본 과정, 민사 심화 과정 및 행정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기본 과정에서는 ADR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민사 및 행정 심화 과정에서는 1) 협상 및 조정, 2) 국내중재 소개 및 사례연구, 그리고 3) 국제중재 소개 및 사례연구 등으로 구성하여 금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재사건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분쟁금액도 상당히 고액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법무연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울시공무원연수원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공연계 교육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ADR 및 중재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4) 중재인력 전문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의 잠재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과 중재대리인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5월 산하에 중재교육원을 설치한바 있고, 2021년에는 기존 또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의 등급화를 실시하고 있다.¹⁴⁾ 현재 중재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중재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정리표

구분	교육 프로그램		
	국내중재	국제중재	조정
입문	ADR 기본과정(2021년 신설)		
일반	국내중재전문가과정 (2022년 신설)	국제중재전문가과정	조정전문가과정 (기본)
고급	중재전문가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Arbitration Academy ¹⁵⁾	조정전문가과정 (심화)
전문분야	건설클레임전문가과정		
중재인교육	신규중재인교육		
	전체중재인교육		

출처: 한국중재학회(2023), *op. cit.*, p. 16, [표 3] 참조.

13) 한국중재학회(2023), *op. cit.*, p. 37.

14) *ibid.*, p. 16.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발생 후, 교육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2021년 온라인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도입 후 수강생이 전년 대비 95% 상승했다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국내중재에 치중되어 있고, 국제중재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제중재전문가과정과 2016년부터 진행되었던 Seoul International Arbitration Academy 프로그램뿐인데, 이 프로그램마저도 2019년 40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후 중단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제중재전문가 과정의 경우 수강생 수가 2019년 29명, 2020년 20명에서 2021년 75명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2022년에는 44명으로 다시 감소하여, 국제중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르면, 중재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은 아직까지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법무부 규정 및 제도 미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기인한 것인지 파악하여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제1차 기본계획은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2대 추진과제로 1) 국내외 중재정보 수집 및 제공과 2) 중재제도 개선 및 선진화로 정한바 있다. 법적 기반이란 중재 관련 법, 규칙 및 법원의 중재 관련 판결에서 나타나는 법원의 태도, 그리고 중재 관련 기타 규범들을 아우르는 의미이다.¹⁶⁾ 이외에도 중재 정보 수집 및 제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도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재 관련 법규 정비

한국 중재법의 최근 개정은 2016년에 이루어졌으며, 2006년 UNCITRAL 모델 중재법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므로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중재법에 뒤처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개정 이후 중재제도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개정이 이루어진지 이미 7년이 지났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중재절차의 진행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제는 중재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15) 서울 국제중재 아카데미는 싱가포르 국제중재 아카데미(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Academy; 'SIAA')를 벤치마킹하여 2016년에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16) 이영석, “동아시아 중재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2017. 2. 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 II), p. 364, 2017.

시점이다. 다행히, 대한상사중재원은 현재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중재규칙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내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고, 현재 내부 초안은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에는 서면 통지 및 제출에 있어 전자적 수단의 활용 확대 등 ODR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중재절차에서 제3자를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복수의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무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국내중재규칙 개정(안)의 핵심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중재규칙의 경우, 2016년 개정 국제중재규칙의 전면 재검토를 거쳐 현재 국제중재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절차 단계별 주요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개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초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2023년 11월 21일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CAB International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1) 당사자의 추가, 중재사건의 병합 관련 절차를 상세히 보완하고, 2) 중재판정부의 조기결정 절차를 신설하며, 3) 신속절차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중재 진행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보완 및 마련할 예정이고, 4) 제3자 자금제공(Third Party Funding) 관련 고지의무를 신설하며, 5) 중재인 선정 시 사무국의 다양성 고려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중재실무의 최근 동향을 반영했고, 마지막으로 6) 중재판정의 전자서명 가능성을 마련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화상심리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2) 국내외 중재정보 수집 및 제공

제1차 기본계획은 외국 중재법과 중재규칙 개정 동향, 국내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동향 및 외국 중재기관 정보 등 중재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를 중재 종합 정보관리체계로서 중재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뉴스레터도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뉴스레터 또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개최 관련 내용 외에는 필자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 수를 볼 때 일응 이해는 되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외부 전문가들과의 공조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경우, 아래에서 논의할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이라 한다) 시스템 구축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중재 관련 법령과 국내법원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사건에 대해 중재 친화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문적인 번역 작업을 통한 영문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 뉴스레터의 경우, 최근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

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부, KOTRA 및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구축하고 매주 1회 약 20페이지 분량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¹⁷⁾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산업계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국내중재 활성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해 (1) 중재제도 인식 개선과 (2)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선 중재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대상 홍보 강화, 광고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보급, 공공부문 중재 이용 확대 및 중재절차 편의 개선 등을 담고 있다.

(1) 중재제도 인식 개선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대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 중재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2) 유관기관 공동설명회 및 간담회, 3) 중재조항이 포함된 신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배포, 그리고 4) 중재제도 활용 제고를 취지로 하는 MOU 체결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중재제도 인식 개선 활동 정리표(2018-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재 설명회 및 세미나 ¹⁸⁾	20회	18회	18회	17회	14회
	861명	465명	386명	674명	683명
유관기관 공동설명회 및 간담회	2회	21회	21회	15회	23회
	120명	102명	1,145명	48명	112명
신규 표준계약서 개발·배포	5종 ¹⁹⁾	-	3종 ²⁰⁾	3종 ²¹⁾	-
MOU 체결	10개 기관	-	4개 기관	1개 기관	-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사업실적서(2018~2022)를 참조하여 저자가 정리

17)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s://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gvcResearch/gvcInsightDetail.do?no=2305&logGb=A9400_20220609 (2023. 10. 30. 최종접속).

18) 여기에 법무연수원 국가송무과정(일반, 심화 과정) 내 ADR 강좌는 제외하였다.

19) 소방시설공사업종, 웹사이트제작, 애니메이션투자, 캐릭터저작물양도, 프리랜서용역위탁 등 5종 표준계약서

20) 인테리어공사, 옥외광고, 전시 관련 등 3종 표준계약서

21) 물품매매, 수출대행, 수입대행 등 3종 표준계약서 개선 및 영문본 개발

나아가,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위한 실무수습, 국제인턴십, 모의중재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개최 등 중재 예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정보 수시 업데이트,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중재지와 중재제도 안내용 소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실적은 한국철도시설공단²²⁾(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가 대한상사중재원과 2018년 MOU를 체결하고 계약금액 240억 원 미만의 공사들을 대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이를 입찰공고문에 사전에 분쟁 해결 방법으로 명기하기로 한 사례이다.²³⁾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이 국가철도공단과 2018년 MOU를 체결한 이후 2023년 10월 31일까지 총 41건의 중재사건이 접수되었다. 또한 최근 충북개발공사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 가운데 분쟁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방법을 원칙적으로 중재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규를 개정 중에 있다고 한다.²⁴⁾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립 및 전개 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지 잘 보여주는 모범사례이다.

(2)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

그렇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은 국내중재 사건 이용률 제고에 얼마나 실적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2015년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의 중재사건 접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사건 접수 현황 정리표(2015-2023)

(단위: 건, 억 원)

	국내중재사건		
	접수	처리	수수료수입
2015	339	304	16.4
2016	319	340	18.2
2017	307	257	11.6
2018	331	303	18.5
2019	373	338	19.2

22) 국가철도공단법 개정(2020.6.9)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2020.9.10. 시행).

23) 박주봉, “[시론] 건설중재의 활성화 필요성”, 대한경제(2018. 8. 27), available at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no=201808241106530460245> (2023. 10. 29. 최종접속).

24) 권혁용, “분쟁해결 중재원칙 도입한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대한경제 인터뷰 기사(2023. 6. 28), available at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no=202306271709220270480 (2023. 10. 29. 최종접속).

2020	336	372	22
2021	450 ²⁵⁾	286	19.2
2022	304	434 ²⁶⁾	19
2023. 10. 말	254 ²⁷⁾	244	14.8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사건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8년 이후 국내중재사건은 2019년 일시 상승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전 세계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를 고려하면, 2023년 10월 말 현재의 실적은 사건 수가 2022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분쟁금액 측면에서 2023년 10월 말 현재 1조 3,680억 원을 기록하여 2022년 동기 대비 3,418억 원과 비교하여 300.2%라는 매우 큰 폭의 상승 전환을 보였다. 이는 분쟁금액이 큰 중재사건이 많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재수수료는 분쟁금액의 크기와 연동되어 상승하므로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국내중재 부문은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산업 기반 강화 및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매우 우수한 실적을 성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탈동조화(decoupling)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등의 확산 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상사중재원은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국내중재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은 2017년 12월 1일에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²⁸⁾에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지정

25) 집단사건 108건이 포함된 수치이며, 집단사건을 1건으로 간주하면 343건이 된다.

26) 집단사건 108건이 포함된 수치이며, 집단사건을 1건으로 간주하면 327건이 된다.

27) 국내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2022년 241건에서 254건으로 약 3.9% 증가하였다.

28)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이러한 국가계약법의 개정에 따른 영향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각종 산업 협회 및 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기관들과 MOU를 체결함으로써,²⁹⁾ 국가철도공단이나 충북개발공사와 같은 매우 유의미한 실적들을 창출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사례 이전에 대한상사중재원의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는 해상운송 및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해상중재 분야의 경우, 2005년 국내 최초의 해상표준계약서집 작성·배포 사업과 2005년 고려해운의 선하증권(B/L) 이면약관에 대한상사중재원 전속관할의 중재조항을 국내 선사 중 최초로 삽입한 사례³⁰⁾를 꼽을 수 있다. 당시 해상표준계약서집 사업이 완료된 후, 2005년 6건에 불과했던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상중재 사건 신청 건수가 다음 해인 2006년에는 1년 만에 3배 급증한 18건이 접수되었던 사례를 이미 경험한바 있다.³¹⁾ 또한,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공동으로 배우 및 가수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당시 故 장자연씨 자살사건 이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약관(배우 및 가수 각 1종)을 제정하려던 때 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10여 차례 이상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중재제도의 필요성과 중재조항 삽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2종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약관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하는 중재조항을 삽입한바 있다.³²⁾ 이로 인해, 종래에는 전혀 중재사건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연예인과 연예 매니지먼트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 중재사건이 이후 매년 20~40건씩 꾸준히 접수되는 계기가 되었다.³³⁾

이와 같이,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어떠한 활동에 치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잘 보여주는 성공사례들이 이미 경험과 노하우로 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29)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2022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인천도시공사 등 약 22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과 MOU를 체결하였고, 2023년 10월 말 현재까지도 부산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및 충북개발공사 등 1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30) 고려해운 B/L 이면약관 중재조항 삽입 성공사례의 경우, 고려해운이 2005년에 자체 선하증권(B/L) 이면약관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중재법을 한국법으로 지정하여 개정한 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24건의 해상중재사건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 고려해운이 참여한바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총 278건의 해상중재사건 중에서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필자는 당시 이 사업의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한국해법학회와 해상 전문 중재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가며 추진한바 있다; 안건형(2021), *op. cit.*, p. 33.

31) 안건형(2021), *op. cit.*, p. 33.

32) 비록 소송과 중재 중 한 방법을 박스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선택적 중재합의 방식이긴 했지만, 필자는 배우 중심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가수 중심의 한국연예제작협회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연예인 매니지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중재 교육 커리큘럼을 포함시켜 약 3년 동안 중재 교육을 하였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33) 안건형,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전속표준약관 제정과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계간 「仲裁」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pp. 60-67, 2009; 홍수정, “엔터테인먼트업계, 중재제도 활용 급증”, 법률신문, 2019. 8. 8, available at <https://www.lawtimes.co.kr/news/154886> (2023. 10. 31. 최종접속).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제2차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중재산업 기반 강화와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해 펼쳐야 할 활동은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맞는 ODR 시스템 구축과 대법원의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태도 변경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IV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Ⅲ. 제1차 기본계획 국제중재 부문 추진 성과 및 평가

1.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제1차 기본계획에서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를 선정하였고, 이를 위한 3대 추진과제로서 (1)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 (2) 중재기관 역량 강화, 그리고 (3) 신규 중재분야 발굴·육성으로 정하고 추진하였다. 아래에서는 3가지 추진과제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

중재진흥산업법이 제정될 당시, 중재 심리시설은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실이 있는 트레이드 타워 43층(서울 삼성동)과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이하 ‘SIDRC’라 한다)가 있던 서울글로벌센터(서울 종로) 11층에 구분되어 위치하고 있어 거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고객의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SIDRC는 법무부,³⁴⁾ 서울시,³⁵⁾ 대한변호사협회³⁶⁾ 및 대한상사중재원³⁷⁾의 공동 지원으로 개소하게 되었으며,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무역협회 및 대법원 법원공탁금 등을 지원 받아 운영하였다. 그러나 SIDRC가 목표로 했던 국제중재사건 심리 유치 실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건(사용일수 33일)에 불과하였다. 이 기간 동안 SIDRC의 중재 심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국내 및 국제 중재사

34) 2013년도 법무부 예산으로 약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 예산으로 SIDRC의 인테리어 및 첨단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공사 금액 등으로 충당된바 있다.

35) 서울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게 임대료를 직접 납부하는 형식으로 SIDRC에 5년 간 무상으로 장소를 임대해주었다.

36)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근 변호사 1인을 파견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였다.

37) 대한상사중재원은 운영비 연 3,000만원을 출연한바 있고, 상주 직원까지 파견하여 SIDRC의 초기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지원하였다.

건의 심리 일부를 서울 삼성동이 아닌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진행하여 심리 유치 건수와 사용일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를 합친 실적도 애초의 기대와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국제중재 분야 지원에 대한 비판과 이의를 꾸준히 제기한 결과,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부터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다. 서울시 역시 5년 무상임대 기간이 완료된 후 장소 제공의 연장 중지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SIDRC는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사실상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는 SIDRC의 기능 중 일부를 흡수 통합하는 형식으로 떠안게 된 것이다.

다행히, 법무부가 2018년 5월에 트레이드 타워 17층과 18층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여 국제중재센터 시설을 설치하였고, 2019년 5월에는 동 건물 24층에 중재교육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총면적 2,205㎡에 이르는 복합중재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³⁸⁾ 이는 싱가포르의 복합중재시설인 Maxwell Chambers의 총 면적 약 4,500㎡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이하 ‘HKIAC’라 한다)의 총면적 약 1,500㎡에는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법무부는 중재원의 시설 중 일부로 2018년 복합중재심리시설을 설립 후 매년 약 12억 원의 임차료와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트레이드 타워의 지속적인 임차료 상승과 국제중재사건 감소로 중재 수수료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임차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에 트레이드 타워 17층과 24층의 시설이 폐쇄되었고, 입주 중재기관 중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이라 한다)는 아셈타워로 이전하였다.³⁹⁾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임차료 부담 증가 및 시설 수익 저조 등의 원인으로 복합중재센터의 규모는 더 확장되지 못하고 제1차 기본계획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현재 중재원에서 운영 중인 복합중재심리시설의 사건 유치 실적이 저조한 또 하나의 이유는 중재 고객들이 느끼는 편리성의 부족에도 기인하다고 보인다. 복합중재심리시설이 위치한 곳이 단독건물이 아니고 트레이드타워이다 보니 운영규정에 따른 제약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중재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간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키를 이용한 보안 출입이 어려울 수 있고, 기술 지원이나 인쇄 및 복사 등의 지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중재의 특수성에 맞는 편리한 심리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중재사건 유치 실적의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중재원의 복합중재심리시설의 사용을 꺼리게 되면 결국 심리시설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38) 황현영, *op. cit.*, p. 272.

39) 한국중재학회, *op. cit.*, p. 56.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이라는 추진전략은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중재기관 역량 강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국제중재 전문인력 충원을 목표로 정한바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직원들은 사비를 들여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교육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1년에 한 명의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 국제중재기관에서 1년 간 파견 근무를 하면서 선진 중재제도를 연구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⁴⁰⁾ 그러나 현재 그러한 해외 연수의 기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재기관의 역량은 중재원 직원들의 역량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해외연수를 포함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국제중재 전문 인력 충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중재 전문 인력들이 낮은 처우와 국제중재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때문에 조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⁴¹⁾ 일부 옳은 지적이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 중에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고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대형 로펌에 비해서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필자가 ICC 국제중재법원에 파견 근무할 때 각 중재팀의 팀장 역할을 하는 Counsel과 팀원에 해당하는 Deputy Counsel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월급은 필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낮은 편이었고, 외국의 대형 로펌과 비교해서는 상상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Counsel들은 보통 4-6년, Deputy Counsel들은 2-3년 근무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ICC 국제중재법원의 수뇌부 역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KCAB International의 경우에도 조기 퇴사한 변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 좋은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직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지원 예산에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2년에서 4년 간 근무 계약 조건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복무규정이 아닌 자신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젊은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는 별도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여 높은 처우를 보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중재

40) 필자도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ICC 국제중재법원(Paris)에서 10개월, GAFTA 중재부서(London)에서 1개월, 카이로 국제중재센터(이집트)에서 1개월 등 총 1년 간 근무하면서, 국제중재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중재 전문가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었다. 그 당시 사귀었던 친구들은 현재 전 세계 중재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들과 소통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정도로 소중한 경험의 기회가 되었다.

41) 국제중재실무회, *op. cit.*, p. 64.

사건의 유치 확대를 통해 국제중재사건 처리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중재 관련 국제행사 참여 및 발표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CAB International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보장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KCAB International 의장은 공식인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중재원 외부에서 국내중재 부문과 국제중재 부문 직원들 간의 반목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심지어 KCAB International을 완전히 독립시켜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자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⁴²⁾ 이에 대해서는 아래 IV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여하튼, 현재 중재기관 역량 강화라는 추진전략의 이행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타당해 보인다.

2. 국제중재 유치 확대

제1차 기본계획에서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국제중재 유치 확대를 선정했고, 이를 위한 2대 추진과제로서 (1) 국제중재 유치 전략 수립과 (2) 국제중재 유치 지원을 정한바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제중재 유치 전략 수립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제중재 현황 및 발전 동향,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인식, 국제중재 참여자들의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기초자료 수집과 이에 따른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국제중재실무회가 국내 기업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표한바 있다.⁴³⁾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 기업들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사내변호사 및 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기존의 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외국 기업들이 제시한 외국의 준거법, 중재지 및 중재기관을 지정한 중재조항에 깊은 고민 없이 합의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⁴⁴⁾ 따라서 기업의 계약 실무자와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상세하고 치밀하게 작성된 중재조항 협상 및 작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42) 오현석, *op. cit.*, pp. 26-27.

43) 국제중재실무회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조항 삼입 실태조사 및 국제중재 사건유치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였으나, 일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 유출이 되지 않고 있어, 필자도 구두로만 일부 내용을 들었을 뿐이다.

44) 강한, “한국기업, 국제분쟁 사전대비 부실”, 법률신문. 2021. 12. 20., available at <https://www.lawtimes.co.kr/news/175182?serial=175182> (2023. 10. 29. 최종접속).

었다고 한다. 옳은 주장이고 KCAB International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중재 유치 실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으나,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뉴스레터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

(2) 국제중재 유치 지원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제중재 유치 지원을 위해 다각적 홍보활동 지원과 중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중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ODR 시스템 구축과도 연결되므로 여기에서는 다각적 홍보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대한상사중재원 외국사무소 개소 및 운영 지원

대한상사중재원은 현재 미국 LA, 중국 상하이 및 베트남 하노이에 3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LA 사무소는 2016년에 개소하였고 현재 한국 변호사 겸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 소유의 소장이 근무하고 있고, 상하이 사무소는 2017년 개소하였고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 변호사 자격의 소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노이 사무소는 2019년에 개소하였고 유일하게 비변호사 자격의 소장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3명의 해외사무소장은 모두 KCAB International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고 인건비는 법무부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끝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며, 2022년 한 해 동안 현지진출 한국 기업 대상 중재원 홍보 활동이 LA 사무소는 6회, 상하이 사무소는 61회에 이르는 등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여 홍보하고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코로나 팬데믹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이들 해외사무소의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이르고 2022년 이후의 활동과 실적에 대해 추후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 홍보를 통한 중재인식 확산도 중요하지만, 현지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한국 기업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를 파악하고 이를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이나 알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연결시키거나, 대한상사중재원 내 분쟁종합지원센터나 KCAB International과 동시에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을 동시에 접촉하여 사후중재합의를 시도하여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45)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에 따르면, 하노이 사무소는 개소 후 비변호사 소장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 중 유일하게 사후중재합의를 통한 중재사건 유치 실적도 1건 있다고 한다.

2) 해외설명회 개최

KCAB International은 국제중재 유치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8년 해외설명회를 6개국 7개 도시에서 9회, 2019년 8개국 11개 도시에서 13회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20년과 2021년에는 거의 해외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홍보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과 2019년의 해외 설명회 개최 지역과 내용을 보면, 그 효과에 의문을 야기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초래하는 행사들도 있어 보인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종료된 만큼, 2019년 이전과 같은 해외설명회 활동도 필요하지만, 국제중재사건 유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홍보 소구점(appeal point)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선택과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내에서도 해외설명회 개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나 비우호적인 시각으로 보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KCAB International 신임 의장과 사무총장에게는 국제 네트워크를 쌓고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관련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야만 국제중재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임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결국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독립적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이 이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국제중재 행사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은 매년 가을에 Seoul ADR Festival (이하 ‘SAF’라 한다)이라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고, 2023년에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1주일 간 27개의 메인 컨퍼런스와 중소규모의 부대 행사들이 진행되었다.⁴⁶⁾ 또한 KCAB International 관계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200명이 현장 참석을 하였고, 2022년부터 중국 상하이 사무소의 협조로 중국 현지에 온라인 중계도 하고 있는데, 금년 행사의 경우 중국 현지 누적 접속자 수가 20만 명을 상회했다고 한다.

4) 대규모 국제중재 행사 유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국제중재 행사를 꼽으라면 단연 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ICCA’라 한다) 총회와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하 ‘IBA’라 한다) 연차 총회 내 중재 세션⁴⁷⁾일 것이다. 각국 정부와 중재기

46) 이 행사는 2015년 필자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진흥전략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UNCITRAL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에 법무부 소속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임창국 검사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SAF라는 이름도 작명하여 현재까지도 한국의 국제중재 관련 가장 큰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47) 2019년 IBA 연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 약 6,000명의 법조인들이 약 200개 세션에 참여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역시 본 총회 내 중재 세션을 지원한바 있다.

관들은 국제중재의 올림픽 또는 EXPO라 불리는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정부의 지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ICCA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ICCA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적극 참석하고 한국 정부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KCAB International과 함께 최고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가능하다.⁴⁸⁾ ICAA 총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중재지로서의 위상이나 대한상사중재원과 KCAB International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국제중재 전문가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중재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과 활동의 결과가 얼마나 실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 접수 건수와 주요 해외기관들의 실적들과의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KCAB International에 접수된 국제중재사건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사건 접수 현황 정리표(2015-2023)

(단위: 건, 억 원)

	국제중재사건		
	접수	처리	수수료수입
2015	74	76	7.1
2016	62	82	8.2
2017	78	54	5.1
2018	62	59	3.0
2019	70	65	8.0
2020	69	76	6.9
2021	50	63	6.3
2022	38	42	3.3
2023. 10.말	44 ⁴⁹⁾	34 ⁵⁰⁾	2.7 ⁵¹⁾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사건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대한상사중재원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국제중재사건의 접수 건수 추이를 보

48) 한국중재학회, *op. cit.*, p. 84.

49) 이 수치는 2022년 10월 말까지의 26건에 비해 40.9% 증가한 수치이다.

50) 이 수치는 작년 동기 대비와 비교할 때 동일한 수치이다.

51) 분쟁금액이 큰 국제중재사건이 거의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면, 60~70건대에서 등락을 보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심각해진 2020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2022년 접수 건수는 2015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보였으며, 수수료수입 역시 2021년에 비해 반 토막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다행히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국제중재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작년 동기 대비 사건 수가 40.9% 반등하긴 했지만 역대 최악의 기록인 2022년 접수 건수와 비교한 수치라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도 있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 확정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주요 해외 중재기관들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과 비슷한 실적을 보였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제중재사건 접수 건수를 비교·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해외 중재기관 중재사건 접수 현황 정리표(2018-2022)

(단위: 건)

연도/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ICDR	993	882	704	685	755
ICC	842	851	929	840	미제공 ⁵²⁾
LCIA	317	395	440	377	333
SIAC	402	479	1,080 ⁵³⁾	469	357
HKIAC	265	308	318	227	344
CIETAC	2,962	3,333	3,615	4,071	4,086

출처: ICDR, ICC, LCIA, SIAC, HKIAC 및 CIETAC 홈페이지와 Annual Report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주요 해외 중재기관의 국제중재 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CIETAC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증가 추세를 보였고, ICDR과 HKIAC의 경우는 2021년만 잠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CC의 경우 2020년 929건에서 2021년 840건으로 9.6% 감소하였고, LCIA는 2020년 440건에서 2022년 333건으로 24% 감소하였으며, 2021년 469건에서 357건으로 23.9% 감소하였다. SIAC의 감소 수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감소 수치인 24%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생각하면 분명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국제중재사건 수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52) ICC 국제중재법원은 전년도 중재사건 통계자료를 다음 년도에 ICC Bulletin을 통해서 발표하는데, 2023. 10. 31.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3) 이 숫자는 집단중재 사건으로 인해 부풀려진 숫자이며, 나중에 싱가포르 법무부가 674건으로 정정하였다고 한다; 국제중재실무회(2022), *op. cit.*, p. 6.

〈표 6〉 주요 아시아 중재기관 중재사건 접수 현황 정리표(2018-2022)

(단위: 건, 조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KCAB	전체 건수	393	443	405	500	342
	전체 분쟁 규모	0.74	1.00	0.58	0.85	0.49
	국제중재 건수	62	70	69	50	38
HKIAC	전체 건수	265	308	318	277	344
	전체 분쟁 규모	9.98	6.38	11.95	9.50	7.47
	국제중재 건수	188	249	228	227	285
SIAC	전체 건수	402	479	1,080	469	357
	전체 분쟁 규모	9.59	10.98	11.53	8.88	7.62
	국제중재 건수	337	416	1,018	405	314
CIETAC	전체 건수	2,962	3,333	3,615	4,071	4,086
	전체 분쟁 규모	18.81	22.60	20.77	22.83	23.50
	국제중재 건수	522	617	739	636	642

출처: KCAB, HKIAC, SIAC 및 CIETAC 홈페이지와 Annual Report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주: 전체 분쟁 규모의 경우 2023년 10월 30일 매매기준율(USD 1 = KRW 1,352.40) 적용 및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계산하였음.

위 통계수치를 보면, 아시아 지역 주요 4대 중재기관의 국제중재사건 수가 2022년에 전년도 보다 증가한 곳은 HKIAC와 CIETAC뿐이다. CIETAC 역시 2020년에 국제중재사건 수가 정점에 다다른 후 2021년에는 13.9%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HKIAC가 SIAC과 달리 2021년보다 2022년에 국제중재사건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국 정부는 홍콩을 국제중재의 매력적인 중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과 홍콩은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의 중재절차 지원을 위한 법원 명령 임시조치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Arrangement Concerning Mutual Assistance in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in Aid of Arbitral Proceedings by the Courts of the Mainland and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2019년 10월 1일 발효된바 있다.⁵⁴⁾ 이 협정은 중국 관련 중재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서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홍콩이 비교할 수 없는 매력적인 중재지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54) Jung Won Jun, “The 2019 Hong Kong-Mainland China Arrangement on Mutual Assistance in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A Major Breakthrough for Hong Kong-seated International Arbitral Proceedings”, *Journal of Korea Trade*, Vol. 24, No. 6, pp. 101-114, 2020.

55) *Ibid.*, p. 101.

또한 HKIAC 역시 최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협상력을 갖추게 된 중국 기업들에 집중하여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홍콩이 여전히 세계 금융의 한 축으로서 가상화폐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각종 가상화폐 관련 표준계약서에 HKIAC 중재 조항이 많이 삽입된바 있어 가상화폐 분쟁 관련 국제중재사건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⁵⁶⁾

요컨대, 국제중재 부문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 시행 기간 동안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사건 유치 측면에서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또한 KCAB International의 전 의장이 사임하고 현재까지도 공식으로 남아 있는 등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중재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제중재 발전 저조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살펴보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현재의 상황에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5년 간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수행한 국제중재 발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이미 지난 57년 간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해당 기관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IV장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중재 활성화, 특히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개선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IV. 제2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대한민국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중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고, 동 법 제3조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당한 금액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1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후 지난 5년 간, SIDRC이 설립되어 활동한 2013년부터 포함하면 10년 간,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직전인 지금 왜 이토록 초라한 성적표를 마주하고 있어야 할까? 필자는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중재 상황에 대한 오판과 이에 따른 방향 설정 오류를 바탕으로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사가 오진을 하면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되는 상황과 비슷한 형국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지경학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

56) 필자는 2023년 Seoul ADR Festival 기간 첫 날인 2023. 10. 30. 16:30-18:00에 개최되었던 IHCF-KOCIA 세미나에 Panel로 참여한바 있고, 이 자리에서 HKIAC의 전·현직 Appointments Committee의 위원인 Arnold & Porter의 김준희 변호사와 Kim & Chang의 임병우 변호사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 우리 정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향후 5년 간 집중해야 할 개선사항 몇 가지에 국한하여 제안하기로 한다.

1.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과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한 나라는 싱가포르와 홍콩,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였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또한 영국의 옛 식민지로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 세계 산업 및 국제중재를 선도하고 있는 영미 문화권 국가들의 법률 및 산업의 실무가들이 친숙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심지어 법원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무역·물류·금융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비즈니스의 허브로서 이미 오랜 기간 그 위치를 향유해 오고 있었다. 실제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점으로서 총괄 회사를 두고 있어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싱가포르에서 해결 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다. 나아가, 중국과 ASEAN 경제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밀접한 관계구조를 가지고 있어 해당 지역의 성장에 따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⁵⁷⁾

싱가포르 산업의 경우, 2018년 기준 총 GDP의 약 70.4%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서비스산업이다. ‘열린 경제’라는 슬로건과 안정된 정치, 나아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의 배경으로 금융 및 기업관련 서비스업의 글로벌 허브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도·소매 무역(17.6%), 기업관련 서비스(business services)(14.9%), 금융·보험업(13.0%), 운송·보관(6.7%), 정보통신(4.1%), 숙박·요식업(2.1%),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11.3%) 등으로 구성된다. 싱가포르 경제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 불과하다.⁵⁸⁾ 그리고 싱가포르 통계청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가 299,800개이고, 이는 싱가포르 내 전체 기업 수 중 9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⁵⁹⁾ 싱가포르의 경우 영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구와 내수시장이 작고 규모가 큰 대형 제조업체들이 많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또한 영미 국가들의 중립국으로서의 이미지로 인해 제3국 간 기업들의 국제중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이미 갖추었고,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포착하여 Maxwell Chambers라는 복합중재센터를 국제

57) 윤진기, *op. cit.*, pp. 7-8.

58) 싱가포르 무역관, “싱가포르 산업 개관”,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6. 27, available at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Gbn=403&bbsSn=403&pNttSn=175616 (2023. 10. 31. 최종접속).

59) Department of Statistics of Singapore, available at <https://www.singstat.gov.sg/modules/infographics/economy> (2023. 10. 31. 최종접속).

중재 활성화의 또다른 성공요소로 추가하여 국제중재가 좀 더 빨리 성공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핸드폰, 배터리, 자동차, 선박, 건설·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형 제조업체들을 보유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 훨씬 큰 내수시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국내중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또한 영미법계가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와는 전혀 상이한 환경에 있는데, 1차 기본계획 수립 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고 Maxwell Chambers와 같은 복합중재센터를 설치하면 국제중재가 금방이라도 활성화될 것처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오판하고 발전 방향을 잘못 제시한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20년 3월 정부 지원 하에 도쿄에 심리시설인 Japa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JIDRC-Tokyo)를 설립하였지만, 거의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다가 합의된 3년 기간이 끝난 후 지원을 중단하여 2023년 5월 31일자로 시설이 폐쇄되었다고 한다.⁶⁰⁾ 2013년 종로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쇄된 SIDRC와 제1차 기본계획 수행 기간이 끝나는 현 시점에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 있는 복합중재센터의 축소된 현실이 위 일본 사례와 겹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공교롭게도 국제중재 활성화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 하나가 영어 구사 환경인데,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중 영어 사용 환경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고, 양국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간 국제중재 활성화의 목표로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실패를 반성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어느 국가와 중재기관을 좀 더 비중 있게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필자는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와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 'ICDR')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AA는 1926년 미국에서 설립된 중재기관으로 약 70년 간 미국 내에서 쌓아올린 중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바탕으로, 국제중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도에 AAA의 글로벌 내부조직으로 ICDR을 신설하였다. KCAB 역시 비교적 충분한 국내중재사건 수요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6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중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는 점에서 SIAC보다는 AAA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 KCAB International 또한 ICDR의 사례를 참고하여 KCAB 내부에 신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미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기에도 언어, 시장규모, 문화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소 이용할 수 있는 내수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중재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60) 한국중재학회, *op. cit.*, p. 60.

벤치마킹 할 모델로 삼을만하다.⁶¹⁾ 반면, SIAC의 경우, 같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다는 점 말고는 사실 모든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주목받는 중재기관이라는 이유로 앞뒤 살펴보지 않고 이를 무작정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도 낮고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AAA에 근무하면서 ICDR의 설립과 글로벌한 성장을 함께 경험한 미국변호사를 KCAB International의 사무총장으로 채용하여 AAA와 ICDR처럼 상호보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중국 정부가 홍콩을 매력적인 중재지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HKIAC가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조사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 기업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HKIAC에 최근 가상자산 관련 중재사건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2. 대한상사중재원 내 국내 및 국제 부문의 시너지 증대 방안

현재 KCAB International의 전 의장이 사임하고 현재까지도 공식으로 남아 있는데, 일부에서는 KCAB International의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국제중재 부문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되어 2023년 10월 말 현재 57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한 기관이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견뎌왔다는 것은 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단기간 내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명성과 신뢰를 쌓기는 더욱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중재 부문의 별도 법인 설립 주장은 실현 가능성도 낮지만 성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존속하던 중재기관의 국제중재 기능만 분리하여 독립된 국제중재기관으로 만든 후 기존의 중재기관은 국내중재만 전담하게 하여 국제중재가 활성화된 사례가 존재하는지, 무역지원기관이자 민간단체이기도 한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분쟁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례 조사와 부수적으

61) ICDR은 현재 12개 언어에 능통한 직원으로 80개국 이상에서 분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페넬과 글로벌 협정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심리장소를 확보하여 당사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KCAB International이 국내중재시장과 분리하여 세계적인 중재기구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ICDR 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s://www.icdr.org/ko/node/69>) (2023. 11. 1 최종접속) 참조.

로 고려하여야 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2차 기본계획에 편승하여 국제중재 부분의 분리라는 목적만 이루고 보자는 식의 주장은 매우 성급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만일 국제 부문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화를 추진한다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산업 분야별로 독립 중재기관 설립 주장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종래에도 해사, 건설,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별도의 중재기관 설립 시도가 있었다. 만일 국제중재 부문이 별도의 독립된 중재기관으로 설립되는 일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행정형 조정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들이 중재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수수료 수입 중 건설 중재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건설 분야에서 정부부처와 업계가 별도의 건설전문 중재기관 설립 시도를 본격화하게 되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연쇄적인 중재기관 설립 움직임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재에 투입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재정적 지원은 한정되어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중재제도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어렵게 구축해 온 우리나라 중재 기반을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법무부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차 기본계획 시행 기간 동안 중재활성화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예산 배정이 대폭 삭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미 국회에서 2016년부터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다.⁶²⁾ 만일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나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중재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국제 부문이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되게 되면 대한상사중재원 내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의 홍보 분야 활동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노하우 공유와 시너지 효과 창출의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 홍보 및 진흥전략 활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홍보 활동의 효과에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홍보 활동의 경우, 노하우 전수 및 공유, 그리고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 홍보 인력들이 서로 협력하여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법무부는 홍보활동을 통한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해 반드시 인건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인건비의 예산 편성 없이 홍보사업이 진행된다 보니 KCAB International은 홍보예산에 책정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홍보

62) 신봉진,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p. 69, 2018; 황현영, *op. cit.*, p. 255에서 재인용.

의 효과를 생각하기보다는 홍보 효과가 없는 불필요한 해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행사 진행이 국제중재사건 유치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⁶³⁾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KCAB International로 국제 부문이 분리되기 전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업본부 내에 국내중재팀, 건설중재팀 및 국제중재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홍보도 진흥전략팀에서 국내와 국제 부문이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8년 KCAB International이 분리되어 출범하면서 한동안 의장, 사무총장, 팀장 및 직원 등 약 8~9명이 국내 부문과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기관처럼 운영되었다. 그리고 제1차 기본계획이 실행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부로부터 국제홍보사업비 예산을 한 해 평균 약 12억 5,400만원⁶⁴⁾을 수령하여 집행하였다.⁶⁵⁾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 유치 실적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저조하다. KCAB International이 국내 부문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한국 중재제도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면 아마도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만약, ICDR이 AAA로부터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하여 경쟁하는 관계로 시작했다면 과연 현재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쉽게 이해될 것이다. 국제중재는 국내중재와 전혀 독립된 별개의 제도가 아니다. 국내중재든 국제중재든 그 뿌리는 상사중재(商事仲裁)이다.

요컨대, 대한상사중재원 내 국내와 국제 부문 간 직원들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KCAB International 의장이 구상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나아가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국제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주고 그들을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K-Culture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걸출한 스타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중재사건을 도맡아 처리할 순수 외국인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변호사의 경우 2년 또는 4년 간 중재사건 경험을 최대한 경험하게 하고, 국내외 중재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행사 참여 및 발표의 기회도 주면 우수하고 야심 있는 외국인 변호사 채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건비 항목에 대한 별도의 예산 편성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63) 상당한 금액의 국제중재 홍보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도 국제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계속 하락하고 국제중재 수수료 역시 계속 감소되는 와중에, KCAB International 일부 임직원의 급여가 국내 부문의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어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 직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반드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별도의 인건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4) 2019년 1,488,375,000원, 2020년 1,286,940,000원, 2021년 1,221,300,000원, 2022년 1,020,339,000원 등 총 약 50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다.

65)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동 기간 국내중재사건 유치 실적과 비교하면 변명이 궁색해 보인다.

3.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중점 추진과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향후 5년의 시행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미 제1차 기본계획의 시행 경험을 돌이켜보면,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느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서 반드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개만 선별하여 제언하고자 한다.⁶⁶⁾

(1) ODR 시스템 구축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재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절차의 디지털화에 대한 제도 정비나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2015년에 중재합의 체결부터 중재판정서의 송달까지 중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재법을 개정하였다.⁶⁷⁾ 우리나라 역시 2018년 11월 SAF 기간 동안 “국제중재에서 화상회의에 관한 서울 프로토콜” (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발표한바 있다.⁶⁸⁾ 그러나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은 ODR 시스템 구축에 별다른 실적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전통적인 분쟁해결 수단인 소송제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중재제도가 법원의 전자소송 제도보다 너무도 뒤쳐져 있다. 법원은 이미 1999년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약 665억 원을 투입해 고도화 작업까지 마친 상태이다.⁶⁹⁾ 202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1심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중 전자소송비율은 97%로 2019년 (82%)보다 15%나 상승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소송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⁷⁰⁾

한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IT 강국이다. 그리고 국제중재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한국으로서 ODR이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국제중재에서 언어와 문화 및 제도에 있어 영미권 중재기관과 중재 전문가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불리한 게임의 룰에 부응하기 보다는 게임의 룰을 아예 뒤엎어야 승산이 있다. ODR 시스템이 바로 IT 강국 한국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코미디언을 본 적이 있는가? 언어가 아닌 칼군무로 대표되는

66) 시간과 지면의 제약 상 제2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67) 2015년 네덜란드 개정중재법의 상세한 내용은 안건형, “국제중재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pp. 259-279, 2018 참조.

68) *Ibid.*

69) 한국중재학회, *op. cit.*, p. 9.

70) *Ibid.*, p. 11.

BTS와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각광받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21.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한 회사는 중국의 BYD이다.⁷¹⁾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에 따라 계속 경쟁을 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제2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할 최우선 순위는 ODR 구축 사업이다.

(2) 선택적 중재조항 문제 해결을 통한 대형 중재사건 유치 확대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향후 5년의 시행 기간 동안 국내 부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법원의 선택적 중재조항 판례의 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절대 대한상사중재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함께 공조하여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향후 5년 간 법원의 태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고, 병행적으로 2018년 개정된 국가계약법 분쟁해결조항의 취지에 맞게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계약법이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중재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예전 공정거래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표준약관 상의 중재조항 삽입 성공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정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앞에서 살펴본 국가철도공단이나 충북개발공사와 같은 중재조항 삽입 사례를 확산시키는 여건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재는 ESG다”와 같은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걸고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ESG이다.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중재가 활성화되면 분쟁해결 비용과 시간이 감소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ESG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나아가, 중재조항 삽입이 정부부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한 지수로 신설 또는 관련 항목에 포함시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2019년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영향평가의 한 항목인 윤리경영 지수에 인권경영 실적이 포함되면서 인권경영이 한 동안 큰 주목을 받고 확산되었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이다.⁷²⁾

이외에도 법무부는 미국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분쟁 관련 무과실보험법과 같이 법률에

71) 정유정,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2위 모델은 테슬라... 브랜드는 BYD 1위”, 매일경제, 2023. 6. 7, available at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54303> (2023. 10. 31. 최종접속).

72) 필자 역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 관련 외부강연에서 중재가 ESG의 중요한 요소이고 중재제도 활용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회적 책임 및 ESG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곤 한다.

의해 중재를 활용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확산 노력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⁷³⁾ ICDR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前 Head였던 Michael Lee 변호사에 따르면, AAA에 한해 접수되는 무과실보험 국내중재사건 수는 20만 건을 상회하고 AAA의 재정 자립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⁷⁴⁾

(3) 국제중재 활성화 방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 간의 관계 설정 문제이다. KCAB International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립하자는 의견까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고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국제 부문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화를 추진한다면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개선의 방향은 국내중재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제중재사건 유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증가된 중재 수수료 수입을 국제중재 활성화 사업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건대 가장 현실적이다. 또 다른 안은 복합중재시설을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켜 한국을 중재지로 하는 다른 국제중재기관의 심리나 임의중재 사건 등을 유치하고 임대료로 법인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 간 SIDRC의 실패 사례를 통해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이미 학습하였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적자가 심각한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이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입장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 시행기간 5년 후 운영 실적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데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습된 경험에서 이러한 주장이 다소 무모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⁷⁵⁾ 이미 부산시 등의 예산을 지원 받아 부산을 해상중재의 동북아 허브로 만들겠다고 설립되었던 아태해사중재센터에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건도 접수되지 않은 사례나, 역시 해상중재협회의 별도의 해상중재 기관에 중재사건이 거의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73) 이미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금융, 소비자, 하도급, 가맹점사업 분야 등의 조정 사건에 대해 법률 제정 또는 조정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조정 합의에 실패한 사건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추진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74) 무과실보험 중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지호, “미국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무과실보험의 중재에 관한 고찰 - 미국 뉴욕주를 중심으로”, 『仲裁研究』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p. 89-110, 2012 참조.

75) 그 외의 국제중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더 상세한 국제중재 활성화 방안은 후속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V. 결 론

중재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2018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 2019. 1. 1.부터 시행되어 2023년 말로 종료된다. 따라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국내중재 부문과 국제중재 부문으로 나누어 i) 우선 국내중재 부문의 추진 성과와 평가, ii) 국제중재 부문 추진 성과와 평가, iii) 제2차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iv)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KCAB International을 완전히 독립하여 별도의 중재기관으로 분리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현실 가능성도 없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KCAB International을 별도의 중재기관으로 독립시키게 되면 1) 분야별 중재기관 설립 주장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2) 제2차 기본계획 5년 기간 동안 저조한 실적이 나올 경우 국회의 중재산업 활성화 예산 지원이 대폭 삭감되거나 중단될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며, 3) 대한상사중재원 내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의 홍보 분야 활동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노하우 공유와 시너지 효과 창출의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 내 국내 및 국제부서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요즘 국내 로펌 중재전문 변호사들 사이에는 시쳇말로 국제중재사건의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많다는 사실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국제중재 부문의 분리 독립과 경쟁 운운할 때가 아니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 중 하나로 3,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명 판결로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솔로몬의 판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솔로몬 왕은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에 대해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한 여자에게 다른 반쪽은 다른 한 여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 솔로몬 왕은 참 어머니가 누구인지 슬기롭게 가려낼 수 있었다.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부문 분리 및 중재기관 법인화 독립 주장을 보자면 솔로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향후 5년간의 이행 노력 및 실적은 우리나라 중재제도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고사할 것인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한, “한국기업, 국제분쟁 사전대비 부실”, 법률신문, 2021. 12. 20, *available at* <https://www.lawtimes.co.kr/news/175182?serial=175182>.
- 국제중재실무회,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용역』,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22. 12. 15.
- 권혁용, “분쟁해결 중재원칙 도입한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대한경제 인터뷰 기사2023. 6. 28, *available at*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6271709220270480.
- 김지호, “미국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무과실보험의 중재에 관한 고찰 - 미국 뉴욕주를 중심으로”, 『仲裁研究』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 박주봉, “[시론] 건설중재의 활성화 필요성”, 대한경제(2018. 8. 27), *available at*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808241106530460245>.
- 법무부, “2019~2023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8. 12.
- _____, “법무부, 2019~2023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동북아시아 중재 허브’ 발전 전략 제시”, 보도자료, 2018. 12. 31.
- 신봉진,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2018.
- 싱가포르 무역관, “싱가포르 산업 개관”,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6. 27, *available at*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Gbn=403&bbsSn=403&pNttSn=175616
- 안건형,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전속표준약관 제정과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계간 『仲裁』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 _____, “국제중재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 _____, “우리나라 해상중재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仲裁研究』 제3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1.
- 오현석, “중재산업진흥법에 대한 평가 및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정정책 제언”, 『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3호, 법무부, 2023.
- 윤진기,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仲裁研究』 제28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8.
- 이영석, “동아시아 중재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2017. 2. 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 II), 2017.

정유정,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2위 모델은 테슬라··· 브랜드는 BYD 1위”, 매일경제, 2023. 6. 7, *available at*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54303>.

한국중재학회,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23. 9. 27.

홍수정, “엔터테인먼트업계, 중재제도 활용 급증”, 법률신문, 2019. 8. 8, *available at* <https://www.lawtimes.co.kr/news/154886>.

황현영,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商事判例研究』 제32권 제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Department of Statistics of Singapore, *available at* <https://www.singstat.gov.sg/modules/infographics/economy>.

Jun., J. W., “The 2019 Hong Kong-Mainland China Arrangement on Mutual Assistance in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A Major Breakthrough for Hong Kong-seated International Arbitral Proceedings”, *Journal of Korea Trade*, Vol. 24, No. 6, 2020.

ABSTRACT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Keon-Hyung Ahn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aims to foster the arbitration system as an industry,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ystematically provide government support so that the arbitration industry can become a future growth engine,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une 28, 2017.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every five years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2019-2023) at the end of 2018,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19.

This study first reviews and evaluates the domestic arbitration sector performance of the first basic plan, then reviews and evaluate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ector performance of the first basic plan, and finally suggests what tasks to focus on when establish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Key Words : Act on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Basic Plan for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KCAB International